

리스약관 신/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9조 (관련서류의 보완 등) ② 금융회사는 리스계약 체결시 제출한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</p>	<p>제29조 (관련서류의 보완 등) ② 금융회사는 리스계약 체결시 제출한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(삭제)</p>
<p>제31조 [관할 법원]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 다만,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 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</p>	<p>제31조 [관할 법원]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 다만,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 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,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</p>

할부약관 신/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 [관할 법원]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 다만,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 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</p>	<p>제16조 [관할 법원]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 다만,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 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,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</p>

근저당권설정계약서 신/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근저당권의 효력범위)</p> <p>① 근저당권의 효력은 본 근저당물건에 부속한 일체의 물품과 장래 수리, 정비, 구조변경 또는 개조, 기타 사유로 부가 종속 될 제 장치 · 기계 · 기구 등 일체의 부속물건에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합니다.</p>	<p>제2조(근저당권의 효력범위)</p> <p>①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및 그 이후에 수리, 정비, 구조변경 또는 개조,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본 근저당물건의 부합물 및 증물에도 미칩니다.</p>